탄 원 서

피고인	김선교
사건번호	2025고합1733
관련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공적 재정의 건전성과 행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법에 따라 거두어야 할 부담금이 부당하게 면제되었다면 그 경위를 철저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그 엄정함은 의혹의 크기만큼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데 있지 않고, 김선교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 결정이 어떤 법적 의무를 위반했고 어떠한 재산상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증거로 가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이 사건에서도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올립니다.

이 글은 공개된 양평군의회 회의록과 공판 보도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공소 주장과 피고인 측의 반박은 각자의 주장으로 구별하며, 회의록에 나타난 공무원의 설명 역시 법원이 그 진실성까지 확정한 사실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요청은 어느 편의 진술을 미리 채택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자료가 올바른 증명 순서에 놓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의 결과에서 출발하되, 형사책임의 판단은 그 결과에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양평군의회 제282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담당 과장은 이 사업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 설명하였습니다. 같은 답변에 따르면 2016년 11월 17일 최초 약 17억 4,800만 원의 부과예정 통지가 있었고, 첫 고지전 심사청구로 개시시점 지가·종료시점 지가·일부 개발비용의 인정 여부가 조정되면서 약 6억 2,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제출된 신청에서는 종료시점 지가의 평가 방식과 사업개시일의 기준이 쟁점이 되었고, 군은 2017년 6월 23일 개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미부과를 통지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담당 과장은 2021년에 기부토지가액이 개발비용과 개시시점 지가에서 중복 반영된 문제를 발견해 2021년 11월 26일 1억 8,768만 4,630원을 정정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속된 수치들은 하나의 단순한 계산을 네 차례 반복한 결과가 아니라, 서로 다른 평가항목과 법적 전제가 바뀌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정확한 분해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원래부터 허용되지 않는 항목이었는지, 어떤 차이는 적법한 법령 해석에서 생겨났는지, 언제 최초의 오류가 발견되었는지가 형사책임 판단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례적인 감면 결과에 관한 의혹이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이의신청이 수용되고 최종 부과액이 사라진 경위는 그 자체로 엄중한 검증 대상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부적정할 수 있다는 평가와 당시 군수가

의도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임무위배를 이끌었다는 평가는 각각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결과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에 도달한 과정에서 김선교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별도로 살펴주시기를 청합니다.

시간적 연결을 확인해야 2013년의 의혹이 2017년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첫 공판준비기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13년 무렵부터 피고인이 특혜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공소 주장을 제시했고, 피고인 측은 그 무렵 개발부담금을 논의할 단계도 아니었으며 그런 의사도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두 설명 중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아직 이 탄원인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 주장이든 그 당시 사업의 진행 단계와 접촉의 내용, 이후의 보고·처분과 이어지는 시간상의 고리를 통해 평가되어야 합니다.

2013년 당시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의 특혜 약속 가능성을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후일 2017년에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2013년부터 불법적인 결심이 존재했다고 거꾸로 확정해서도 안 됩니다. 만남이나 연락의 일시, 누가 어떤 요구를 했는지, 해당 요구가 담당 부서에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는지, 최종 결재의 어떤 변경으로 이어졌는지가 연쇄적으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주관적 의사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군수실 면담과 위법한 지시를 구별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최은순·김진우 측의 청탁을 받아 담당 공무원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측은 감면 청탁을 받거나 이를 관철하도록 지시한 일이 없다고 부인해 왔습니다. 면담 자체에 관한 다툼과 면담 내용에 관한 다툼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민원 경청이나 법령 검토 지시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특정 사업자를 위하여 결론을 미리 정하도록 압박했다면 그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화의 직접 청취자와 전달 청취자를 구별하고, 최초 담당자의 산정표와 수정 검토서, 군수 보고자료와 결재문구, 정정신청의 접수일 및 담당자 진술을 실제 순서대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어떤 공무원이 구체적인 수정을 주도했는지, 수정 근거를 스스로 확인했는지, 피고인에게 상신한 정보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진술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발언을 전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행정처분을 보고 추측한 해석인지도 심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진술의 가치를 미리 낮춰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한 진술도 충분히 검토하되 그 내용과 한계를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객관적인 자료가 지시의 존재와 내용을 뒷받침한다면 그 책임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연결이 증명되지 않는 부분까지 결과로부터 추론하여 책임을 확대하지 않아 주시기를 청합니다.

손해액과 이득액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법적 산정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시행사가 약 22억 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예정액 약 17억 4,800만 원, 첫 조정액 약 6억 2,500만 원, 미부과 처분, 뒤늦은 정정부과액 약 1억 8,768만 원은 각기 다른 기준일과 항목을 반영합니다. 이 수치의 차이만으로 약 22억 원의 검찰 주장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법한 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개발이익과 비용을 각 법률요건에 따라 다시 산정해야만 형사법상 이익·손해와 특정 피고인의 행위 사이의 연관성이 구체화됩니다.

대법원 2012년 8월 30일 선고 2012도5220 판결은 업무상배임에 따른 재산상 이익이 존재하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이득액에 기초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배임죄 자체를 자동으로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형을 가중하는 금액 요건을 별도로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이 산정한 금액이 어떤 자료와 계산식에서 비롯되었는지, 각 변경항목이 적법한 산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실제 처분의 어느 부분을 바꾸었는지를 엄밀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후의 정정부과 역시 그러한 구별을 필요로 합니다. 뒤늦은 부과나 납부가 있었다고 하여 과거 위법행위가 당연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한 부담금과 회복된 금액을 확인할 때 참고할 의미는 있습니다.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할 때 결론의 설득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의 경중이 아니라 증명의 정확성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양평군 공무원들이 사업기간 연장 관련 허위공문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1심 무죄나 항소심 진행은 이 사건 배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일부 겹치더라도 공소사실과 구성요건이 다르면 각각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공공의 돈이 잘못 감면되는 일을 용인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선교 피고인의 권한과 의무, 지시의 존재와 내용, 그때의 인식, 재산상 결과와 인과관계를 모두 증거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른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는 부분에는 제325조에 따른 무죄 판단을, 증명되는 부분에는 그 범위를 넘지 않는 책임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공직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공직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법의 동일한 기준입니다.

2026년 _____월 _____일

탄원인 성명: _____ (본인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_____ 연락처: _____

주소: _____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귀중